의안번호	제306호
의결연월일	2021. 3. 17.

- 예산군 고령장애인 지원 조례안 -

심 사 보 고 서

1. 심사경과

가. 발의일자 및 발의자: 2021. 2. 24. 정완진, 김만겸, 김봉현 의원

나. 회 부 일 자 : 2021. 3. 9.

다. 상 정 일 자 : 2021. 3. 17.

제268회 예산군의회(임시회)

제1차 행정복지위원회

2. 제안설명 요지 [의원 : 정 완 진]

가. 제안이유

○ 고령장애인에 대한 복지 공백을 최소화하기 위한 고령장애인 특화 지원 사업을 추진하여 고령장애인의 자립과 생활의 질을 확보함으로써 건강한 노년기를 영위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함.

나. 주요내용

- 조례의 목적, 정의, 군수의 책무에 관한 사항을 규정 (안 제1조 ~ 제3조)
- 고령장애인 지원계획 수립·시행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 (안 제4조)

- 고령장애인 실태조사에 관한 사항을 규정(안 제5조)
- 고령장애인 지원사업에 관한 사항을 규정(안 제6조)
- 고령장애인 지원사업을 위한 협력체제 구축에 대하여 규정 (안 제9조)
- 효과적인 사업 추진을 위한 지원사업의 사후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(안 제10조)

3. 검토보고 요지 (전문위원 : 박 우 현)

- 본 조례안은 고령장애인을 위한 특화된 지원 사업을 추진하여 고령장애인의 자립과 생활의 질을 확보함으로써 고령장애인이 건강한 노년기를 영위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하는 것으로,
- 장애인이 고령이 되어 노인복지 지원 대상으로 변경됨에 따라 발생할 수 있는 복지 공백을 최소화하는데 기여할 수 있다는 측면에서 의미가 있다고 보여 지며,「장애인복지법」등 상위 법령에 위배되지 않으므로.
- 원안과 같이 심의하셔도 문제점이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.

4. 질의 답변요지

O 없 음

5. 토론요지

O 없 음

- 6. 심 사 결 과
 - O 원안가결
- 7. 소수의견 요지
 - O 없 음
- 8. 기타 필요한 사항
 - O 없 음